

중국, 고형폐기물 관리 및 처리 개선 고형폐기물 오염방지법 개정

중국, 폐기물 관련 주요 이슈 (2019. 06 ~ 2020. 05)¹⁾

Topic 1. 고형폐기물 오염방지법 개정

Topic 2. 생태환경부, 고형폐기물로 인한 토양오염방지기술 공지

Topic 3. 상하이 등, 의료폐기물, 고형폐기물 폐기를 위한 제재 실시

Topic 4. 룽징시, 고형폐기물 종합처리센터 프로젝트 실시

중국, 2004년 이후 16년 만에 고형폐기물 오염방지법 대대적 개정

2020년 4월 29일 개정 승인, 9월 1일부터 발효 예정

폐기물 배출 규제 및 위반 시 처벌 강화 등 주요 골자

2019년 6월 25일 ‘고형폐기물 오염방지법’ 개정안 초안이 인민 회의 상임위원회에 제출됨. 이후 국가 인민 상임 위원회에서 2020년 4월 29일 해당 법률 개정을 승인함. 해당 개정에는 기존 6개 장(章) 91개 조(條)에서 9개 장 126개 조로 확장됨. 개정안은 9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고형폐기물 배출 및 관리에 관한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개정안은 자국 내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한 분류 및 관리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유해 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통제하며, 고형폐기물법 위반 시 처벌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함. 개정안의 세부 사항은 폐기물에 관한 정의, 폐기물 배출에 관한 의무, 고형폐기물 수입 금지,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등이 있음. 지난 5월 중국생태환경부는 해당 개정안의 추진 및 이행에 대해 고지한 바 있음

1) 중국 현지 환경 연관 매체 및 기관의 총 2,000건 기사 및 보도자료 분석 결과, 폐기물 관련 상위 4개 이슈 (2019년 06월 ~ 2020년 05월)

중국, 폐기물 관련 주요 이슈

• 2019. 06. 26.

고형폐기물 오염방지법 개정안, 인민 회의 상임위원회에 제출

25일 고형폐기물 오염방지법(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 개정안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됨. 해당 개정안은 환경오염 방지, 공중보건 보호 및 생태 안전 유지를 목표로 고형폐기물의 배출과 관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함. 9개 장, 109개 조로 구성된 해당 개정안에는 고형폐기물 분류, 수거, 운송 및 처리와 농업 폐기물, 플라스틱, 유해 폐기물 등의 처리에 관한 조항과 무단 고형폐기물 투기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재를 포함하고 있음

자료 : Civil + Structural Engineer (cenews.com), 「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时隔15年迎来大修 固废管理更严格更科学」, 2019-06-26

• 2020. 01. 17.

중국, 2020년 말까지 고형폐기물 수입 근절 목표

중국생태환경부는 2020년 말까지 고형폐기물 수입 근절을 목표로 2016년부터 56가지 폐기물 수입 금지 및 단계적으로 고형폐기물의 수입을 감축하고 있음. 중국생태환경부는 2019년부터 폐기물 수입 및 재활용 업체를 대상으로 위반 단속 강화를 통하여, 2019년 고형폐기물 수입량은 전년 대비 40%가 감소한 약 1,350만 톤이라고 언급함. 이러한 중국정부의 고형폐기물 수입 제재와 자국 내 고형폐기물 재활용 장려 정책에 따라 수입에 의존하던 중국 주요 재활용 회사들은 자국 내 발생한 폐기물 재활용으로 전환하는 등의 효과를 보이고 있음

자료 : China Daily (chinadaily.com), 「China continues efforts to eradicate waste imports」, 2020-01-17

• 2020. 05. 07.

고형폐기물 오염방지법 개정 승인 (9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

지난 4월, 전국인민대표대회는 고형폐기물 오염방지법 개정을 승인함. 개정된 법은 2020년 9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임. 폐기물의 정의, 고형폐기물 관리, 폐기물 배출자의 법적 책임, 고형폐기물과 오염원 배출 허가제, 제조업 분야 신뢰성 강화, 폐기물 수입 금지 및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 위반 시 처벌 수위 강화 등 여러 변화가 있었으며 이를 통해 중국 내 여러 기업에 상당한 영향이 갈 것으로 예상됨

자료 : The National Law Review (natlawreview.com), 「China Promulgates Amendment to Its Solid Waste Law」, 2020-05-07

이슈 세부 정보

중국, 고형폐기물 오염방지법 개정안 세부 사항

중국, 고형폐기물 오염방지법 개정안 일부

구분	주요 내용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 환경의 보호와 개선, 고형폐기물에 의한 오염 예방 및 통제, 공중 보건 보호, 생태계 안전 유지, 생태문명 건설을 이행, 지속 가능한 경제·사회적 발전을 위해 이 법을 제정함 (제1조)
폐기물 감독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 폐기물 : 생태환경부는 국무원 산하 여러 부서와 협력하여 산업 폐기물이 일으키는 공중 보건과 환경에 대한 영향력을 조사하고, 기술적인 정책과 체계를 마련하여 산업 폐기물 배출량을 줄임 (제32조) - 가정 폐기물 : 지방정부 또는 국가 차원에서 폐기물 분류 및 운송 등의 가정 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수립함 (제43조) - 건설/농업 폐기물 : 지방정부 또는 국가 차원에서 건설 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을 막고 건설 폐기물 분류 및 처리를 위한 시스템을 수립함 (제60조), 지방정부의 농업 관련 부서 또는 국가가 농업 폐기물 재활용 시스템을 수립하고 폐기물 배출자는 해당 재활용 시스템을 따라야 함 (제64, 65조) - 유해 폐기물 : 생태환경부는 국무원 산하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유해 폐기물 목록을 작성하고, 유해 폐기물 확인 기준과 절차,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만들. 유해 폐기물 대상은 유동적임 (제75조)
법적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 배출자는 의무적으로 고형폐기물 배출, 수거, 보관, 운송, 이용, 처분에 관한 책임 시스템을 만들고, 폐기물 생산과 배출에 대해 기록해야 함 (제36조) - 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 처리를 맡길 시 처리자의 자격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해야 하며 서면 계약을 통해 폐기물을 처리해야 함. 또한, 계약서에 명시된 환경 보호 수단에 맞게 폐기물을 운송, 사용, 처리해야 함 (제37조) - 제37조 사항을 지키지 않은 폐기물 배출자는 과태료의 대상이 됨(제102조)
고형폐기물 수입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형폐기물 수입을 점진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국무원 산하 중국생태환경부는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협력함 (제24조) - 해당 법을 위반하여 고형폐기물을 수입하는 경우 고형폐기물을 반환하고 최소 50만 위안, 최대 50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함 (제115조)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 및 포장의 디자인과 제조는 친환경적 생산을 위한 국가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해당 기준은 국가의 경제·기술적 상황을 고려하여 정해짐. 또한, 과대 포장에 의한 고형폐기물 예방책을 마련함 (제68조) - 분해되지 않는 비닐봉지 및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 판매, 사용이 금지됨 (제69조), - 여행, 숙박 등의 시설에 관련 기준에 따라 일회용 제품을 사용할 수 없음 (제70조)

자료 : 环保在线兴旺宝旗下 (hbzhan.com), 「全文发布!《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2020年修订)》」,2020-04-30.
The National Law Review (natlawreview.com), 「China Promulgates Amendment to Its Solid Waste Law」, 2020-05-07

참고 문헌

□ 참고 사이트

1. Civil + Structural Engineer (cenews.com)
2. 第一环保网 (epwho.com)
3. 环保在线兴旺宝旗下 (hbzhan.com)
4. China.org.cn (china.org.cn)
5. The National Law Review (natlawreview.com)
6. China Daily (chinadaily.com)